

의안번호	2202747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B27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3억원, 2030년 5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63억원(연평균 53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A)	39	39	39	39	39	197	39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B)	13	13	13	13	13	66	13
추가재정소요(C=A+B)	53	53	53	53	53	263	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제1항) 1. 사업장의 근로조건 2.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현황 3.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태 4.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24조의3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의2.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의무규정
5	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의2.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점검 등)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 추계 —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수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 발생 — 유사사례를 이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2	안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	• 미대상 —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안 내용인 ①사회적응 교육, ②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E-9: 지정 취업교육기관에서 사업주로부터 취업교육비를 제공받아 운영 * H-2: 산업인력공단 수지차예산 사업으로 운영
3	안 제24조의3(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 등)	○	• 추계 — 유사사례를 이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4	안 제29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5	안 제30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 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 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5조의2)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병행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원단가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준용하여 산출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①숙련기술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②일가정 양립실태조사, ③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이 있으며, 추계기간 동안(2026~2030년)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은 최근 5년간 조사단가를 토대로 산출
 -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실태 점검이 해당 지역에 전반에 대해 실시되어 해당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가정

① 숙련기술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조사목적) 숙련기술 장려 및 숙련기술인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연구조사
- (조사주기) 1년
- (조사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일가정양립실태조사

- (조사목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 (조사주기) 1년
- (조사주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③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조사목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고용 및 미고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
- (조사주기) 1년
- (조사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현황

(단위: 백만원)

실태조사명	조사년도	소요예산
숙련기술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022	50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2	180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22	465
평균		232

자료: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유사 실태조사의 평균비용을 토대로 추계

[표 3]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실태조사 단가(A, 백만원)	232	232	232	232	232	—
지방자치단체 수(B, 개)	17	17	17	17	17	—
소계(C=A×B, 억원)	39	39	39	39	39	197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24조의3)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고센터를 운영하므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충신고센터의 운영 방식(직접 운영,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등) 및 설치 지역, 설치 개소 등에 따라 달라짐
 - 개정안은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다만, 본 추계서는 2004년 12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이후 2023년까지 추진하였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과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말 종료
- 사업개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의 종합적인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¹⁾
- 지원내용
 - (거점) 인건비·사업운영비·사업비 지원
 - (소지역) 상담원 인건비 및 컴퓨터 운영비(월 30만원) 일부 지원

1) 고용노동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4.3

[표 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23.12월)

거점센터							
연번	센터명	운영기관		소재지			
1	한국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 구로구			
2	의정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의정부시			
3	김해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김해시			
4	창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경남 창원시			
5	인천	인천경총 및 한국노총 공동수급체		인천 남동구			
6	대구	대구경총 및 한국노총 공동수급체		대구 달성군			
7	천안	(재)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충남 천안시			
8	광주	(재)한국능력개발원 및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동수급체		광주 광산구			
9	양산	(사)희망웅상		경남 양산시			
소지역센터							
연번	기관명		지역	연번	기관명		지역
1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	19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포항지부		경북
2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	20	(사)외국인과의 동행		경북
3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경기	21	구미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경북
4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	22	천주교마산교구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		경남
5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경기	23	(사)진주사랑의집		경남
6	(재)한국이주노동재단		경기	24	(사)울산외국인센터		울산
7	천주교의정부교구 구리EXODUS		경기	25	성요셉노동자의집		전북
8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26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
9	(재)지속가능경영재단		경기	27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광주
10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28	(사)아시아인권문화재단		광주
11	(사)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29	광주이주민지원센터		광주
12	글로벌미션센터		경기	30	로드월드비전		전남
13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	31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전남
14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	32	전남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전남
15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충남	33	(사)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전남
16	(사)홍성이주민센터		충남	34	(사)함께하는공동체		강원
17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	35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
18	대전다문화센터		대전	총 35개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4년 신규 사업
- 사업개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상담, 지역특화 교육, 지역 산업·고용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운영 등
-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9개 지방자치단체(인천, 대구, 광주,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충남, 부산, 전북)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당 4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표 5]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 결산액	2022 결산액	2023 결산액	2024 예산액	2025 예산액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7,045	6,893	6,960	—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	—	—	1,800	1,800
합계	7,045	6,893	6,960	1,800	1,800

주: 1. 고용노동부는 체류지원 사업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을 추진
 2. 2021~2023 결산액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고용보험기금) 사업의 실적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므로, 본 추계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중 거점센터가 설치된 지역(한국, 의정부, 김해, 창원, 인천, 대구, 천안, 광주, 양산)과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천, 대구, 광주,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충남, 부산,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
 - 대전, 세종, 강원, 제주, 경북, 울산, 전남을 대상으로 함
 - 지원단가: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에 필요한 지원단가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 중 거점 대상 지원액(5,719백만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개소수(9개소)로 나누어 산출

[표 6] 2023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고용보험기금) 계획액 편성근거

#. 거점센터 운영비: 5,719백만원
-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4,030백만원
* (센터장) 9명 × 3,350천원 × 12월
* (팀 장) 20명 × 3,030천원 × 12월
* (직 원) 102명 × 2,402천원 × 12월
- (운영비) 건물관리비, 공공요금 등 812백만원
* (공공요금) 9개소 × 4,400천원 × 0.84 × 12월
* (자산관리비) 9개소 × 3,300천원 × 0.84 × 12월
* (보안강화) 9개소 × 10,900천원 × 0.84
* (사무용품) 9개소 × 350천원 × 0.84 × 12월
- (사업비) 한국어교육 등 사업비 876백만원
* (한국어반) 9개소 × 25천원 × 105시간 × 12월
* (정보화반) 9개소 × 25천원 × 65시간 × 12월
* (귀국준비) 9개소 × 25천원 × 80시간 × 12월
* (자원봉사자사례비) 9개소 × 40명 × 10천원 × 12월
* (교육운영비) 9개소 × 5천원 × 2회 × 900명
* (농축산·어업 특화센터) 12개소 × 200천원 × 3명 × 0.9 × 12월

자료: 고용노동부

-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의 형태(자치단체 보조)로 추진할 경우 지방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추계서의 유사사례인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추진 형태(민간보조)를 고려하여 지방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일정기간(거점 3년, 소지역 1년) 동안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지만, 본 추계서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지원하며, 추계기간 동안 지원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7]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원대상(A, 개)	7	7	7	7	7	—	—
지원단가(B, 백만원)	188	188	188	188	188	—	—
추가재정소요(C=A×B)	13	13	13	13	13	66	13

주: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지방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